

소음 · 진동 관리법 일부 개정 법률안 (이명수 의원 대표 발의)

의
번
안
호
5509

발의연월일 : 2017. 2. 9.

발의자 : 이명수 · 권석창 · 홍문표
함진규 · 정태옥 · 한선교
경대수 · 박찬우 · 성일종
강효상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 제5조제1항제3호에서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”로 규정되어 있으나, 「공유수면관리법」은 2010년에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정과 동시에 폐지되었음. 그러나 여전히 폐지된 법률명이 규정되어 있어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.

따라서 「공유수면관리법」을 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하여 혼란을 없애고자 함(안 제5조제1항제3호).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제1항제3호 중 “「공유수면관리법」 제5조에”를 “「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」 제8조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환경부장관이나 시·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·고시하면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.</p> <p>1. · 2. (생 략)</p> <p>3. 「<u>공유수면관리법</u>」 제5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·사용 허가</p> <p>② (생 략)</p>	<p>제5조(다른 법률과의 관계) ①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1. · 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</u>」 제8조에 -----</p> <p>-----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